

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(분실·훼손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일
신청인	회사·법인명	대표자 성명	
	법인등록번호	전화번호	
	주 사업장 소재지		
신청내용	등록 가축의 종류	계열화사업 등록번호	
	재발급 신청사유 []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[]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		

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귀하
특별자치도지사

신청인 제출서류	등록증(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	→	검토 및 결재 처리기관: 시·도	→	등록증 작성	→	발급